

은결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자 권리 보호와 욕구충족을 위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경 및 갱신,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서비스 계약

- 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 나.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수급자 보관,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주6일(09:00 ~ 22:00) 서비스 이용을 기본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가.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따라 기관은 15%를 수급자에게 받고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 나.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다. 장기요양수가에 의한 비용 외의 비급여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비급여: 이·미용비, 병원동행시 교통비, 개인 여가활동비 등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일반	건강보험료순위 20 ~ 50%	건강보험료순위 0 ~ 25%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5%	9%	6%	무료

[방문요양 이용금액]

(단위: 원)

서비스시간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20일 이용시
30분	16,940	14,400	2,540	50,800
60분	24,580	20,900	3,680	73,600
90분	33,120	28,160	4,960	99,200
120분	42,160	35,840	6,320	126,400
150분	49,160	41,790	7,370	147,400
180분	55,350	47,050	8,300	166,000
210분	61,670	52,420	9,250	185,000
240분	68,030	57,830	10,200	204,000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 나. 기관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다. 수급자 상태변화나 욕구변화에 따른 상담 및 상담내용을 급여내용에 반영을 요청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 나.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
- 다. 방문요양급여 범위외의 부당한 요구 금지 의무
- 라.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마. 수급자의 거주지 등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 바. 기타 기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

3.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 가.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 나. 급여 제공중 어르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다. 급여제공 중 알게된 어르신의 신상 및 개인정보 누설 금지
- 라.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준수
- 마.수급자 가정내 집기류 분실,파손방지 및 수급자 부상등의 안전사고 방지,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

4.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때
- 다.수급자(보호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질병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때
- 라.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미납시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마. 수급자는 계약해지 요건 발생시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